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가단46934 판결 [보증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이준서, 조용석

피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준동, 김말금, 최단비

변론 종결2019. 8. 30.

판결 선고2019.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183,553원과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경기도와 사이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이하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업무의 수행)

① "도"는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은행"에게 통보한다. "도"는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업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라고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경기신보"가 "은행"에 통보한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가 지정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
2. 제1호에 의해 취급한 대출금 내역을 "경기신보"에 통지
3. 제1호에 의한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
4. 제1호에 의하여 대출받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은행"은 제1항에 의하여 "도"로부터 통보받은 중소기업 등이 대출신청을 하는 때에는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한다.

제4조(대출조건)

"은행"은 본 협약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출조건을 준수한다.

1. 대출금액은 "도"가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는 "은행"이 본 협약대상 대출 차주별로 산정하되 제5조에 따라 "은행"이 고시하는 최고금리 이하로 한다.
3. 대출기간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자금별 대출기간으로 한다.
4. "은행"은 위 제2호의 대출금리에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기업부담금리로 하여 당해 대출 기업 등으로부터 징구한다.

5. 위 4호의 이차보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차보전금은 "도"가 지급하며 "은행"은 제6조의 내용에 따라 지급을 신청한다.

6. 운전자금의 경우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대출기업이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상환을 원하는 때에는 "은행"은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의 실현을 위하여 'A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은행이 재단에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은행이 추천하는 기술신용평가(TCB, Technology Credit Bureau) 보유 기업에 대해 재단이 신용보증(이하 '협약보증'이라 한다)하고 은행이 대출취급함으로써 도내 기술성 우수기업의 성공적인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약관 및 면책기준)

본 협약의 내용과 재단이 은행에 기통지한 부분보증 약관 및 면책기준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특별출연금"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은행이 재단에 특별히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신규보증"이라 함은 본 협약체결 이후 은행이 제9조의 지원대상 기업에게 신규 대출하는 대출금에 대한 재단의 개별보증을 말한다.

제6조(특별출연)

- ① 은행은 기술신용평가 보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재단에 3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제9조(지원대상)

- ① 협약지원 보증대상은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등급이 T-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② 협약보증의 대상자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운전자금의 신규대출로 하며, 근보증서에 의한

한도거래대출은 대상자금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증절차 등)

① 은행은 재단에 협약보증 신청시 신용보증신청서 '비고'란에 "본 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협약보증 추천 건임"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상기업을 추천한다.

② 은행이 추천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결정은 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단은 본 협약보증을 의한 보증서 발급시 아래와 같이 보증특약을 부여하기로 한다.

[2017년 특별출연] "본 보증서는 귀 행와의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

다. 한편, 피고는 금융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전자신용보증서 등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피고가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형식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용보증조건"은 신용보증서에서 명시한 채권자, 피보증인, 보증금액,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 보증비율 및 보증특약을 의미합니다.

제5조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① 이 보증서에 의한 신용보증관계는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이 취급될 것

제21조(보증특약의 운용)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채권자(원고)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면책)

① 재단(피고)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때

4. 제5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재단(피고)이 정하여 채권자(원고)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제22조에 따라 원고에게 통지한 면책기준(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하였을 때

가.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 위반○ 채권자 영업점, 채무자, 보증부대출과목이 다른 경우다. 위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이외의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1) 보증특약에서 한정된 신용보증대상채무가 아닌 때(2) 보증특약에서 제한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

마.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2.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80,000,000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기한 2020. 11. 20.,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90% 등으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전자보증 운용에 관한 협약에 의해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바. 이 사건 보증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본 보증서는 12개월 거치 24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하실 것(상환주기 3개월). 2. 본 보증은 경기도 운전자금(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임. 3. 본 보증서는 귀행과의 2017년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서를 제공한 후, 원고로부터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일반운전자금대출), 대출금액 2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20. 11. 20.,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CD 3개월물) + 2.234%],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대출금리를 할인받는 경기도 운전자금대출이 아닌 일반운전자금대출이었다.

아. 소외 회사가 2018. 4.경부터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8. 5. 28.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180,861,928원으로 계산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기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결정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통보받은 해당 대상자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업무협약 제9조에서 정한 원고의 대출은 '운전자금의 신규대출'인데, 이 사건 대출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이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정한 협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할 것인데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31. 기준 보증금 원리금 합계 182,183,553원과 그 중 원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대출이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피고의 보증 대상이 되는 대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과 피고가 보증하는 대출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대출과목이 동일할 뿐 이자율을 달리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정하는 면책사항 중 제1호 다목 '(2) 보증특약에서 제한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면책범위는 채무 전액이 아닌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은 연 3.884%인데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이차보전 대출로 취급하였다면, 위의 연 3.884%의 이자율에서 피고의 이차지원율인 연 1.3%(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통보서에 의할 때 은행 금리 연 3.51%부터 연 4.00%까지는 이차지원율이 연 0.8%이고 여기에 추가지원율 연 0.5%를 더하면

연 1.3%이다)를 공제한 연 2.584%로 이자율을 정하였을 것이므로, 연 2.584%의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실행하였어야 함에도 일반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조건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 및 면책기준에 따라 피고의 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및 이 사건 보증서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경기도운전자금이 아닌 일반운전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은 원고와 경기도 사이의 협약으로서 구체적인 통보의 형식과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은 피고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 '2017년 특별출연 본 보증서는 귀 행과의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토록 하고 있을 뿐이다.

② 피고가 그동안 대출받는 채무자 회사들에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를 발급하여 준 외에 원고에게 별도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동안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경기도 운전자금'이라고 기재한 보증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으로 취급하여 왔다.

③ 피고가 소외 회사에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를 발급함으로써 채무자를 통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임을 원고에게 알렸거나, 이 사건 보증서에 '경기도

운전자금(벤처창업기금)'에 대한 보증임을 명백히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서의 교부로써 원고에게 대상자선정결과를 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제9조에서 정한 원고의 대출에는 일반적인 기업운전자금대출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 이 사건 업무협약의 취지와 목적, 이 사건 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본 보증은 경기도 운전자금(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의 대출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한 운전자금 대출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운전자금대출을 전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업무협약 제9조에서 규정한 운전자금의 신규대출은 근보증서에 의한 한도거래 대출과 대비하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교부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통보서(을 제1호증)와 같은 이자지원 상세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특약사항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융자지원 협약이 적용되는 보증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통해 피고가 보증서 발급시 "2017년 특별출연 본 보증서는 원고와의 기술금융 보증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임"이라는 보증특약을 기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는 소외 회사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임을 인식하였으므로 원고의 규정에 따르거나 피고에게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이자지원 내역을 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의 보증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책사항 중 보증특약에서 제한한 보증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면책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서의 신용보증조건(보증특약 포함)을 위반한 경우 재단책임분담금액 전액이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서의 특약사항에서 "2. 본 보증은 경기도 운전자금(벤처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경기도 운전자금 대출이 아닌 일반운전자금대출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은 보증서의 보증특약에 의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분담금액 전액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지영